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10월 7일(김문천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05년 10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10월 25일(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김문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운영위원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제고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 각종 증명서발급을 인터넷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조례문 중 법률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구성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옥천군수 및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으로 정하고, 위촉직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항)
- 안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를 인터넷과 무인발급 수수료표를 추가하고 수수료는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과 동일하게 정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동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구성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정보화 사회에 맞게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수수료를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에 인터넷 발급 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따른 인터넷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
----------	-----

발의연월일 : 2005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문천 의원의 7인

### □ 제안이유

- 당연직운영위원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제고 시키므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 각종 증명서발급을 인터넷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제명을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 운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구분하여
  - 당연직위원을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옥천군수,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으로 명문화 하고
  - 위촉직위원을 충청북도의회의원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 각종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창구발급만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분하고, 「국립학교각종수수료증명규칙」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문증명수수료를 1통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별표)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를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③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옥천군수 및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제10조중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호의 하나”로 하고, 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를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6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1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증명구분	창 구 수수료	인터넷 수수료	무인발급 수 수 료	비고
1. 입학증명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 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 료를 징수하지 아 니함.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단, 발급대행 업체수수료 1,000원 별도			
6. 재직증명				
7. 체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2. 교육비납부증명				
13. 학위수여(예정)증명				
14.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관 계 법 령 발 취

##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운영) 대학은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대학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충청북도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운영) ①대학운영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대학운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수업료 등 면제)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
2.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업료 등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수수료) ②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기금설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장학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①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에 대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별표]

###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증명의 종류	수수료의 금액	비 고
1. 입학증명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직증명 7. 제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위수여(예정)증명 12.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3.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14. 교육비납입증명	1통당 국문증명의 경우에는 300원, 외국문증명의 경우에는 6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b></p> <p><b>제2조(운영)</b> 대학은 <u>교육기본법</u> 제2조 및 <u>고등교육법</u> 제47조에 의한 대학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p><b>제4조(구성) ① ~ ② (생략)</b>  <b>③</b>위원은 <u>충청북도의회의원</u>과 관계 공무원 및 경제적,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p> <p><b>제10조(수당 등)</b> 충청북도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2조(설치운영) ①</b>대학운영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u>지방자치법</u> 제117조에 의거 대학운영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b>②~③ (생략)</b></p> <p><b>제17조(수업료 등 면제) ①</b>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u>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            2. (생략)  <b>② (생략)</b></p>	<p><b>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b></p> <p><b>제2조(운영)</b>……… 「<u>교육기본법</u>」 ………            … 「<u>고등교육법</u>」 … … … … …            …………….</p> <p><b>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b>  <b>③</b>당연직위원은 <u>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u>, <u>옥천군수</u> 및 <u>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u>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u>충청북도의회의원</u>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p> <p><b>제10조(수당 등)</b> ……………            ……………            「<u>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p> <p><b>제10조(설치운영)</b> ……………            …………… 「<u>지방자치법</u>」 ……………            …………….</p> <p><b>②~③ (현행과 같음)</b></p> <p><b>제17조(수업료 등 면제) ①</b>………<u>각호의 하나</u>………            …………….</p> <p>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p> <p>2. (현행과 같음)  <b>② (현행과 같음)</b></p>

현행	개정안
<p><b>제19조(준용규정)</b>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p><b>제19조(준용규정)</b> .....  .....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p>
<p><b>제20조(기금설치)</b>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b>제20조(기금설치)</b>.....  .....  ..... 「지방자치법」.....</p>
<p><b>제26조(준용규정)</b> 장학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b>제26조(준용규정)</b>.....  ..... 「지방재정법」...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p>
<p><b>제27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b>  ①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에 대하여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생략)</p>	<p><b>제27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b>  ①..... 「지방공무원법」.....  .....  .....  ② (현행과 같음)</p>
<p><b>제31조(준용규정)</b>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b>제31조(준용규정)</b> .....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p>

[현행]

###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종 류	수 수 료	비 고
1. 입학증명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이 표에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합격증명	○ 외국문증명 1통당 : 500원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직증명		
7. 제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2. 교육비 납부증명		
13. 학위수여(예정)증명		
14.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개정안]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증명구분	창 구 수수료	인터넷 수수료	무인발급 수 수 료	비고
1. 입학증명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합격증명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3. 재학증명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단 발급대행 업체수수료 1,000 원 별도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직증명				
7. 체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 신설	※ 신설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2. 교육비납부증명				
13. 학위수여(예정)증명				
14.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